

전주영생고등학교 규칙 신규 대조표 (2022.09.14.)

구	신(개정안)	비고
<p>제14조(교외체험학습) ② 기간은 횡수에 관계없이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</p>	<p>제14조(교외체험학습) ② 기간은 횡수에 관계없이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</p>	<p>제14조(교외체험학습) 연간 체험 학습 일수 확대</p>
<p>제52조(학칙 개정절차) ①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사립학교는 자문)를 거쳐 개정한다.</p>	<p>제52조(학칙 개정절차) ①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</p>	<p>제52조(학칙 개정절차) ① ‘사립학교는 자문’ 삭제</p>